

제1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 귀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 1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소집일시: 2016년 11월 22일(화요일) 오전 8시

2. 소집장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하이셀(주)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합병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2. 참고>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3. 참고>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장대용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박원호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영철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조남문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별첨1. 참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될 경우 당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일 (2016년 11월 22일) 이전까지 합병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당사 본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통지는 임시주주총회일 전일 (2016년 11월 21일)까지 당사에 도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1> 및 III. 경영참고사항-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6년 11월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하이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상준

<별첨1>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안내문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안건(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기준일인 2016년 10월 25일 현재 당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1) 안건(회사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주주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당 회사에

■ 실질주주(증권회사에 거래주주)는 주주총회일 2영업일전까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주주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 종료일(2016년 12월 12일)까지 당 회사에 제출

■ 실질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2016년 12월 08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보통주 1주당 1,380원입니다.

-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2016년 12월 12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장소는

■ 명부주주는 당 회사 자금담당 부서이며,

■ 실질주주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4. 기타

- 매수청구의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 실질주의 경우는 거래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제출시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주권포함)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전략기획실		
전화번호	02-2017-7993	팩스번호	02-6203-6060

2016년 11월 07일

하이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상준

(붙임양식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회사의 합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보통주 :	우선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2016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하이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양식 2)

주식매수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보통주 :	우선주 :
반대의사표시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주식매수청구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2016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하이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양식 3)

매수가격 조정 신청서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매수가격에 반대하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보통주 :	우선주 :
반대의사표시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주식매수청구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2016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화번호 :)

하이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위 임 장

본인은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되는 하이셀(주) 임시주주총회 (그 연회 및 속회 포함)에서 권유자 하이셀(주)가 지정하는 (이재철, 박한상, 이정호)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아 래 -

1. 의결권 위임 내용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소유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	

2.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의안번호	안건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합병 승인의 건 존속법인: 하이셀(주), 소멸법인: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장대용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박원호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영철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조남문 선임의 건		

※ 상기 각 의안에 대해 찬반을 O표 또는 V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 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2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관련의안	지시내용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2016년 ____월 ____일____시____분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주명: _____ (인)

제19기 임시주주총회 정관 개정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	개정사유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하이셀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u>HICEL CO., LTD</u> 라 표기한다.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브레인콘텐츠”라 한다. 영문으로는 <u>Brain Contents CO., LTD</u> 라 표기한다.	상호변경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설)</u>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권등의 관련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2. 온라인복권 개발 및 기계장치(스캐너, 바코드 등) 제조, 판매 및 공급업 3. 복권사업관련 서비스업 4. 복권 등의 판매, 판매대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사업목적 변경
<u>(신설)</u>	<u>삭제</u>	
<u>(신설)</u>	<u>삭제</u>	
<u>(신설)</u>	<u>삭제</u>	
2.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5. 부동산 <u>취득개발 및 임대사업</u>	
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6.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5. 초정밀가공기술을 이용한 정밀부품의 제조 및 판매	7.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 음반, 캐릭터, 게임물 등의 제작, 수출입, 배급 및 기타 관련사업	
7. 부동산 임대업	8. 광고 마케팅 대행업 및 출판업	
8. 유통업	9. 음반, 비디오, DVD 제작업	
9.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10. 콘텐츠 판권 유통사업	
10. 영화, 드라마, 비디오의 제작, 투자, 배급, 상영등의 사업	11.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판매에 관한 사업	
11. 광고 마케팅 대행업 및 출판업	12. 콘텐츠의 전자화 및 인터넷 전송 서비스업	
12. 음반, 비디오, DVD 제작업	<u>삭제</u>	
13. 콘텐츠 판권 유통사업	<u>삭제</u>	
14.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	<u>삭제</u>	
<u>(신설)</u>	<u>삭제</u>	
15. 환경에너지 설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판매업	13. 전자상거래 및 관련업	
16. 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사업	14.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17. 각종 환경오염 관련 시설 설비, 설계, 시공 및 관리업	15.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8. 전자상거래업	16. 데이터베이스검색, 개발 및 판매업	
19.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임대업	17.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0.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8. 인터넷서비스 및 운용 용역업	
21. 데이터베이스검색, 개발 및 판매업	19. 정보화시스템의 기획 개발, 공급업	
2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0. 홈페이지(모바일포함)제작기획, 구축 및 판매업	
<u>(신설)</u>	21.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서비스업	
<u>(신설)</u>	22.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 운용업	
<u>(신설)</u>	23. 모바일 플랫폼 제작 공급 및 컨설팅업	
<u>(신설)</u>	24. 게임개발 및 판매업	
<u>(신설)</u>	25. 부가통신사업	
<u>(신설)</u>	26. 특수 및 일반인쇄업	
<u>(신설)</u>	27. 상품권 발행 유통 판매대행업	
<u>(신설)</u>	28. 온오프라인 예매권 판매업	
<u>(신설)</u>	29. 금융 투자, 정보의 제공업	
<u>(신설)</u>	30. 기업의 인수 합병 벤처기업 및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업	
<u>(신설)</u>	31. 프랜차이즈업	
<u>(신설)</u>	32. 만화 기획, 매니지먼트 프로덕션	
<u>(신설)</u>	33. 웹툰, 웹소설 제작, 도매 및 유통업	
<u>(신설)</u>	34. 캐릭터 개발, 제조, 유통업	
24. 전자 금융업	35. 전자 금융업	
25.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36.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현행	개정	개정사유
26. 직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37. 직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7.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 기기(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회로)의 제조 및 판매업	38.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 기기(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회로)의 제조 및 판매업	
28.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 기기(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39.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 기기(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29. 위성용 장비의 부품개발, 유통, 판매업	삭제	
30. 자동차용 전자장비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삭제	
31. 스마트카 및 전자제품용 3D 디스플레이 부품의 제조, 판매업	삭제	
34. 스마트카드 관련 기술연구 및 컨설팅업	삭제	
35. 회로기판 재료 제조 및 판매업	40. 회로기판 재료 제조 및 판매업	
37. 환급창구운영사업	41. 환급창구운영사업	
38. 쇼핑몰 운영 및 시설관리업	42. 쇼핑몰 운영 및 시설관리업	
39.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제공업	43.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제공업	
40. 환전사업	44. 환전사업	
41.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5.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2. 결제대금예치업	46. 결제대금예치업	
43. 세금환급 무인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7. 세금환급 무인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4.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48.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45.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업	49. 인터넷, 이동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및 정보제공업	
46. 의료기기,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50. 의료기기,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47. 의료용 장비 및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삭제	
48. 의료용 계측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51. 의료용 계측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49. 공업용 계측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삭제	
50. 생화학, 면역, 분자 및 유전자 진단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판매업	삭제	
51. 바이오(Bio)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52. 바이오(Bio)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52. 의료용 바이오센서의 개발, 제조, 판매업	53. 의료용 바이오센서의 개발, 제조, 판매업	
53. 환경 및 공업용 바이오센서의 개발, 제조, 판매업	삭제	
54. 52, 53 항의 센서들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계측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	삭제	
55. 위 52, 53 항의 센서들을 구현하기 위한 센서물질들의 개발, 제조, 판매업	삭제	
56. 위 52, 53 항의 센서들을 검출시스템으로 하는 분석시스템의 개발, 제조, 판매업	삭제	
57. 바이오진단 및 의료기기 사업	54. 바이오진단 및 의료기기 사업	
58.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55.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59. 헬스케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56. 헬스케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60. 헬스케어 서비스업	57. 헬스케어 서비스업	
61. 의료용 프로그램 개발업	삭제	
62.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용역업	삭제	
63.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58.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64. 화장품 원부자재 도소매업	삭제	
65. 화장품 도소매업	59. 화장품 도소매업	
66.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삭제	
67.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삭제	
68.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삭제	
69. 연구용역업	삭제	
70. 연구개발서비스업	삭제	
71.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60.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72. 의약품 원부자재 도소매업	삭제	
73. 건강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삭제	
74.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1.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현행	개정	개정사유
<u>75. 건강기능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u> <u>76. 식품 및 식품원료 제조, 판매, 수출입업</u> <u>77. 전 각호의 관련 기술자문 용역업</u> <u>78. 전 각호의 수출입업</u> <u>1. 전자부품 제조, 유통, 판매 및 수출입</u> <u>4.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u> <u>6. 전기,전자,기계,컴퓨터 주변기기 부품의 제조 및 판매</u> <u>32.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판매 및 마케팅</u> <u>33.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제조, 판매, 서비스업</u> <u>36.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79. 기타 위에 부대하는 사업</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62. 전자부품 제조, 유통, 판매 및 수출입업</u> <u>63.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u> <u>64. 전기,전자,기계,컴퓨터 주변기기 부품의 제조 및 판매</u> <u>65.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판매 및 마케팅업</u> <u>66.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제조, 판매, 서비스업</u> <u>67.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u> <u>68. 위 각호에 관련된 유통업</u> <u>69.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무 및 판매유통업</u> <u>70.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용역업</u> <u>71.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업</u> <u>7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재화 용역 서비스의 해외 중개, 수출, 판매 및 투자업</u> <u>73.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u>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평택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본점소재지변경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hicel.com)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braincontents.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홈페이지변경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생략 ② (신설)회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신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기준②수정)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별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생략.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동일 ② 회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동일 ⑥ 동일 1. ~2. 동일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	문구통일

현행	개정	개정사유
<p>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p>1. ~3 생략</p> <p>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6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p>	<p>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p>1. ~3 동일</p> <p>⑧ 동일</p> <p>⑨ 동일</p>	
<p>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1,000억 원</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7 생략</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경우 각각 <u>5백억원</u> 이내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5-23조의2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액면총액 중 <u>500억원</u>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p>	<p>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7. 동일</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경우 각각 <u>오백억원</u> 이내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 ⑤ 동일</p> <p>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5-23조의2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액면총액 중 <u>오백억원</u>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p>	문구 통일
<p>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1,000억원</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경우 각각 <u>5백억원</u> 이내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동일</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경우 각각 <u>오백억원</u> 이내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 ⑥ 동일</p>	문구 통일
	<p>이 개정 정관 중 제3조(본점의 소재지) 조항은 2016년 11월 22일 개정 및 시행하고, 제3조 이외의 모든 조항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p>	시행일

<별첨3>

이사 선임 예정자 이력사항

존속회사의 이사 선임예정자(해당 이사의 취임일은 합병등기일인 2016.12.28에 개시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직책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사내이사/대표이사 (상근/등기)	장대용	750115-1*****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현) (주)지오텔 (주)KT뮤직(구, 뮤직시티) (주)씨즈미디어
사내이사 (상근/등기)	박원호	720205-1*****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현) 애드티브이노베이션(주) (주)디엔에이소프트 (주)씨즈미디어 한국과학기술원
기타비상무이사	김영철	721018-1*****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사외이사(현) 저스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사외이사	조남문	710910-1*****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사법연수원 32기